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86
----------	-------

발의연월일 : 2026. 1. 20.

발 의 자 : 조인철 · 박희승 · 정준호
민형배 · 정일영 · 박용갑
박지혜 · 어기구 · 이정문
한정애 · 조정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인 표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도 심의 및 차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를 직접 제작·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표시등)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서비스에서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등을 훼손·위조·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해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등) ①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체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유통하는 경우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

서 표시등의 지원을 하고, 표시등의 훼손·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 및 훼손·위조·변조의 탐지·판독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1항에 따른 표시등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한다.

5의2.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등을 훼손·위조·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2의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운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

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조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4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5부터 제4호의9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6(중전의 제4호의3) 중 “제44조의7제6항”을 “제44조의7제7항”로 한다.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등을 훼손·위조·변조한 자

4의4. 제4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물의 표시 등) ①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한다)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이하 “표시등”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표시등을 할 수 있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인공지능 생성물을 유통
하는 경우 표시등을 훼손하거
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③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
보통신서비스에서 표시등을 지
원하고, 표시등의 훼손·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술
적 조치 및 훼손·위조·변조
의 탐지·판독을 위한 기술 개
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1항에 따른 표시등의 방법,
제3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의 구
체적인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신설>

6. ~ 9. (생략)

② (생략)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제4

3조의2제1항에 따른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표시등을

훼손·위조·변조하여 제공하

는 정보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부

터-----

-----.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5호의2의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자·운영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를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시조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

[illegible]

1.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2. ~ 4.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벌칙)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4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
지예-----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3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 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 여 표시등을 훼손·위조·변 조한 자
<신 설>	4의4. 제43조의2제3항을 위반하 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자
4의2. (생 략)	4의5.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4의3.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 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	4의6. 제44조의7제7항----- -----

지 아니한 자 <u>4의4.</u> ~ <u>4의6.</u> (생 략) 5. ~ 24. (생 략) ④ (생 략)	----- <u>4의7.</u> ~ <u>4의9.</u> (현행 제4호의4 부터 제4호의6까지와 같음) 5. ~ 2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